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는 후속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은 매 학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45조).
- 나.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때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47조).
- 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57조의2).
- 라. 사립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우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련사항과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관할청은 예외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63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안 제106조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각각 “심 의를”로 한다.

제57조의2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63조제2항 후단 중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자문결과”를 “심의 또는 자문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 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수업일수) ① (생략)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거쳐야 한다.	제45조(수업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심의를 ----- -----.
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거쳐야 한다. ④ (생략)	제47조(휴업일 등) ① ----- ----- ----- ----- 심의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심의를 -----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u>의 심의 또는 자문을</u> 거쳐야 한다.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 ----- ----- ----- 심의를 ----- -----.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 <u>자문</u> ”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u>자문 결과</u> 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u>심의 또는 자문</u> ” ----- -----. ③ ----- <u>심의 또는 자문 결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연 락 처	(044) 203 - 7083